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지진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내진인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진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인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운영위원회는 내진인증 제도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전반을 심의·감독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내진인증의 신청, 심사, 인증,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등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5조(인증대상) 내진인증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지진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내진기술 :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지진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술로 내진인증 규격서가 없는 제품이나 기술을 내진기술로 분류한다.
2. 내진제품 :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지진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품으로 내진인증 규격서가 제시되어 규격서에 따라 인증심사가 가능한 것을 제품으로 분류한다.

제6조(의무사항)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 ③ 인증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기술적·경영상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개) 인증기관은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현황 등 인증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인증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내진인증 관련 심사의 적절성 및 인증기준의 적합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증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인증기관 소속의 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증 심사원
3. 내진인증 심사 경험이 풍부한 인증심사원
4. 내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5. 인증 및 내진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진기술 및 제품의 인증, 갱신, 확대, 정지, 취소 등의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2. 내진제품 인증심사 평가기준(제품 규격서 포함)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내진기술 인증심사 평가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인증마크 사용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서 규정한 사항

④ 인증위원회 심의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술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내진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심사를 위하여 기술인증 심사원을 확보한다.

② 기술인증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내진분야의 교수
2. 연구소에서 내진관련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을 가진 박사
3. 내진 관련분야 기술사
4.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에서 3년 이상 내진관련 업무에 종사자한 자
5. 협회 또는 관련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시험 및 인증관련 적합성평가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위 각 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자

③ 기술인증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

1.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성
2. 내진성능
3. 신뢰성 및 안정성
4. 현장 적용성

④ 기술인증 심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위원 중 5인 이상 출석 시 실시하며, 심사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제10조(제품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내진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신청제품의 제조사업장 또는 공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품질경영체계 및 공장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품인증 심사원 확보한다.

② 제품인증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2인으로 구성한다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
2.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른 제품인증분야 평가사
3. 기타 위 각 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자

③ 기술인증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

1. 표준화 일반
2. 자재의 관리
3. 공정관리
4. 제품의 품질관리

5. 제조설비의 관리

6. 검사설비의 관리

- ④ 제품인증 심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위원 2인 이상이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 ⑤ 제품인증 심사원은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실무교육이나 내진관련 교육(세미나 등)에 매년 2시간 이상 참가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 3 장 인증 절차 및 방법

- 제11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진기술) 및 별지 제2호 서식(내진제품)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의 구비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내진기술인증은 300만원(부가세별도), 내진제품인증은 2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 ④ 신청인은 심사 실시 7일 전에는 인증신청의 철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서류 일체를 폐기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내진인증 규격서가 개정되거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정 또는 변경사실을 즉시 알리고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⑥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내진기술 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 기술이 별표 3의 내진기술 인증심사평가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내진기술 인증심사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은 내진기술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인이상 7인 이내의 기술인증 심사원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 등이 포함된 인증심사 계획을 심사 개시 7 근무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내진기술 인증심사 단계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진기술 인증절차 및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1. 기술심사 :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인의 면접 등을 통하여 내진인증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심사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지진 특성이 고려된 기술에 대한 인증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
 - 2. 현장확인 : 기술심사 결과 신청기술이 설치되거나 제조하는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술심사 확인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 3. 종합심사 : 신청서류, 기술심사 및 현장확인 등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인증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심사

제13조(내진제품 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 제품이 내진제품 인증심사 평가기준(별표5)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내진제품 인증심사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은 내진제품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인 이상의 제품인증 심사원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 등이 포함된 인증심사 계획을 심사 개시 7 근무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내진제품 인증심사 단계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진제품 인증절차 및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
 - 1. 공장심사 : 인증신청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내진인증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공장심사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 2. 제품심사 : 제품 시험결과(별지 제8호 서식)가 제품 규격서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 3. 종합심사 :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심사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인증위원회에서 내진제품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사

제14조(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기관은 내진인증 부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과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별지 제9호 서식).

② 인증기관은 제1호에 따라 인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내진 인증업무와 관련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계약기간
3. 내진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5. 인증기관이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과 관련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인증받은 기술(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
6. 인증받은 기술(제품)이 제3자로부터의 불만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8. 인증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 자가 행하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0.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인증서의 교부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기술(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인증유효기간 4년으로 내진인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내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증번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증기술(제품)명, 인증유효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에 대한 사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증마크 운영기준(별표2)에 따른다.

제16조(인증마크) 인증마크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원부의 상표권에 따른 인증마크(별표1)를 내진인증마크 운영기준(별표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 기술(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부여 및 인증서 부여 후의 인증기술(제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신청 기술(제품)이 인증심사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 장 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를 대상으로 내진기술인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갱신심사 및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1. 갱신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인 4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7조의 내진기술 인증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특별심사는 제17조에 따른 인증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증기술에 대한 구매자 불만 등으로 인증기술의 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제12조의 내진기술 인증절차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를 대상으로 내진제품인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1. 정기심사는 인증을 획득한 후 2년 이내 제13조 제4항의 공장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제품 제조공장에서 인증제품의 생산여건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KS제품 표시인증이 유효한 업체의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의 생산실적 및 시험기준 유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갱신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13조 제4항의 공장심사,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KS제품 표시인증이 유효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특별심사는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자 불만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의 공장심사,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말까지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인증기관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사후관리 개시 10 근무일 전에 그 사실을 인증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 근무일 이내라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개선권고) 사후관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후관리에 따른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사후관리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인증 중단 및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내진인증마크 사용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1호의 경우에는 내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내진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 및 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인증 기술 및 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개선권고 등에 따른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 받은 자의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증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6.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 ③ 인증기관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 제출을 제외한다. 인증서 재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제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 5 장 기타 운영 사항

제22조(인증서 소유자의 의무) 인증받은 자는 발행된 인증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갖는다.

1. 인증받은 범위에서 인증의 효력을 주장한다.
2. 인증대상에 대한 고객과 제3자로부터의 불만사항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인증기관 요청 시 불만처리 내용 또는 개선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인증대상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4. 법령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한다.

제23조(공개문서) 인증기관은 인증 기준과 프로세스, 신청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인증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1]

내진인증마크

가. 인증마크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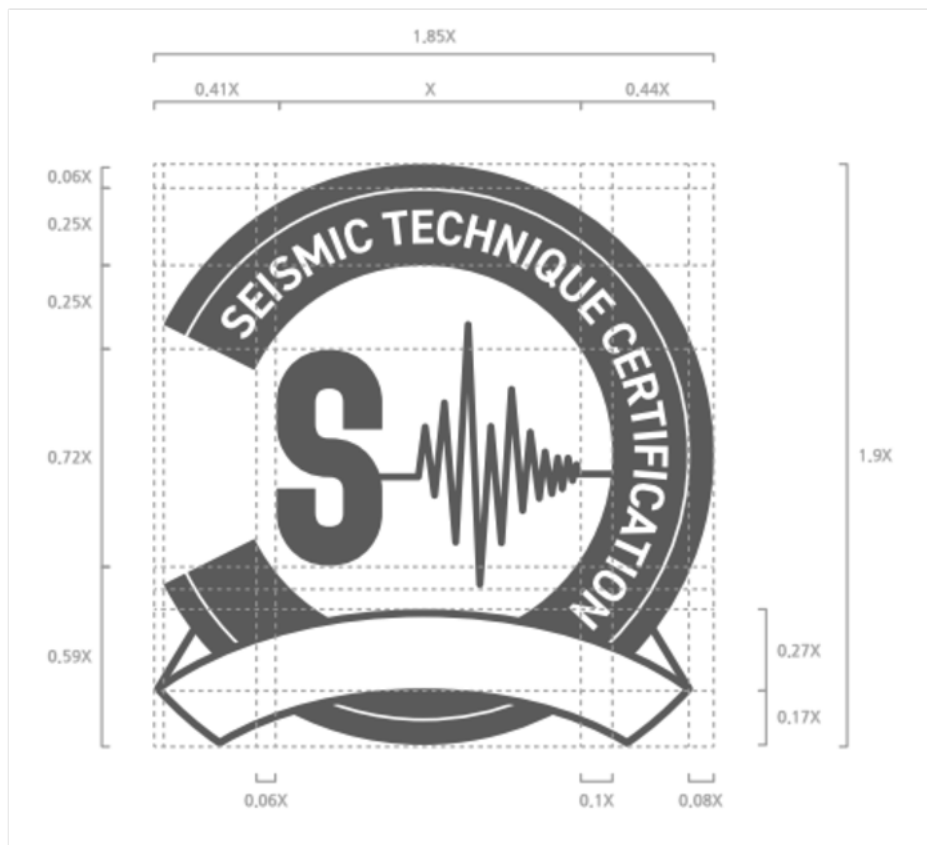


[제품인증]



[기술인증]

나. 인증마크 작도법



(1) 기준 모듈(Basic Module) 및 좌표

가. 디자인의 기본 척도가 되는 기준 폭을 X로 설정한다.

나. 마크의 수평 분할은 좌측 0.41X, 중앙 X, 우측 0.44X의 비례를 가지며, 모든 요소는 이 수치에 의해 구획된 그리드 내에 작도한다.

(2) 전체 비례(Proportions)

가. 마크의 전체 유효 영역은 가로 1.85X, 세로 1.9X의 그리드 프레임 내에 위치하며, 각 구성 요소는 지정된 좌표값에 맞춰 정밀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3) 중앙 심볼(Central Symbol)

가. 마크의 핵심인 이니셜 'S'와 지진파(Wave) 그래픽은 전체 그리드의 중앙부인 가로 X, 높이 0.72X로 구획된 직사각형 영역(Zone) 내에 위치시킨다.

나. 심볼은 이 영역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가. 'SEISMIC TECHNIQUE CERTIFICATION' 문구는 최상단 기준선에서 0.06X이격된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높이 0.25X를 가지는 아치형 밴드 내에 배열한다.

나. 문구의 곡률은 해당 그리드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한다.

(5) 하단 리본(Bottom Banner)

가. 하단부의 리본 형상은 심볼 영역 하단에서 시작되는 높이 0.59X의 영역에 작도한다.

나. 리본의 밴드 폭과 꼬리 부분은 우측 하단 상세도에 명시된 0.27X0.17X의 세부 수치에 따라 형상을 완성한다.

다. 인증마크 복제 및 사용기준

(1) 복제 기준

가. 내진인증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나.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다.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기준

가. 인증서 서식 정 가운데에 내진인증마크를 음영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 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이하의 워터마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영기법의 채택은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내진인증기업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내진인증제품으로 인증된 날 이후부터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공장출하 시에 내진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별표2]

내진인증마크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의 작성방법과 인증서, 서류, 장부, 기타 홍보물 등에 내진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내진인증마크의 사용 및 인증기업임을 표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기관 :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진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인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를 말한다.
- ② 인증기업 : 「내진인증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한 인증 기술(제품)이 내진 인증을 획득한 기업
- ③ 내진인증로고 : 내진인증(영문 풀네임, 이니셜)에 대한 로고를 말한다.
- ④ 내진인증마크 : 인증기업이 그들의 인정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벌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내진인증로고와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인증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제3조(도안) ① 내진인증마크에 대한 도안은 내진인증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 ② 내진인증마크는 내진인증로고 및 인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③ 내진인증마크의 크기, 색상, 형태는 내진인증 운영규정 [별표 1] 인증마크 복제 및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사용 절차) ① 인증기업은 인증기관과 내진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후 내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범위) ① 인증기업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에 한하여 내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내진인증마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1.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
 - 2. 인증받은 제품과 그 포장
 - 3. 인증기업의 홍보물 및 웹사이트

- ③ 내진인증마크는 인증기업의 자체 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두 마크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제6조(사용 기준) ① 인증기업이 내진인증마크를 사용할 때, 내진인증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내진인증마크의 도안을 임의로 변경, 왜곡, 확대 및 축소할 수 없다.
- ③ 인증제품의 물리적 크기로 인하여 마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받은 제품의 외관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요령) ① 인증서에는 내진인증마크,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회사명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② 홍보물에 사용할 때는 인증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부정 사용 금지) ①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내진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②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제조하는 인증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내진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내진인증마크 위조 또는 다른 형태의 오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조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내진인증마크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내진인증마크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은 내진인증마크 부정 사용 사례 및 제재조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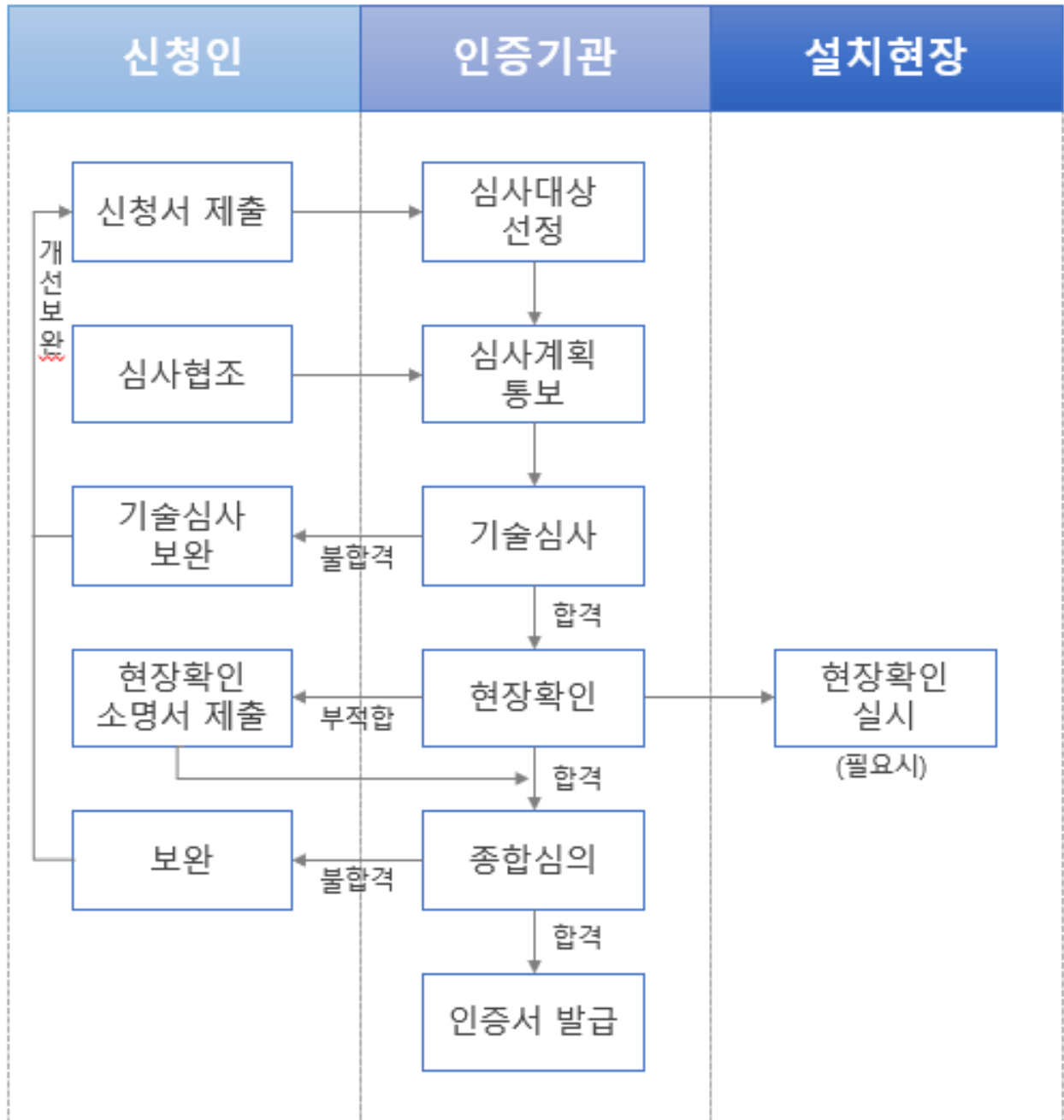
내진기술 인증심사 평가기준

구분	심사 항목별 정의	평가 기준
기술심사	<p><u>주요 목적</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기술의 내진 대상 여부 2. 지진 특성이 고려된 기술의 성능기준 수립 <p><u>A. 기술의 필요성과 효과성</u> : 지진 상황에서 신청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 정도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 환경에서 필요하거나 적합한 성능 및 기술인지 여부 2. 신청된 기술이 지진 환경에서 내진 성능을 구현할 가능성 <p><u>B. 내진성능</u> : 신청 기술의 정량적 내진성능 만족 및 입증 타당성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내진기준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인지 여부 2. 신청 기술의 성능을 입증하는 방법의 유효성 <p><u>C. 신뢰성 및 안정성</u> : 해당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방법 및 기술 소명 등 제시된 입증 자료의 신뢰성 2. 지속적 사용 및 성능 구현에 대한 안정성 <p><u>D. 현장시공성</u> : 기술의 성능으로 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성 여부를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 판단 2. 신청 기술의 현장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 여부 	<p>70점 이상</p> <p>[별지 제5호 서식]</p>
현장확인	<p><u>주요 목적</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심사에 대한 확인 (현장 및 제품성능 충족여부) <p><u>A. 현장확인</u> : 기술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현장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확인 	<p>적합</p> <p>[별지 제6호 서식]</p>
종합심사 [심의]	<p><u>주요 목적</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심사 및 현장확인의 적절성 2. 심사 결과와 내진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3. 내진인증의 필요성 <p><u>A. 인증위원회 서면회의</u> : 기술심사 및 현장확인 서류에 대한 확인</p>	<p>적/부</p> <p>(3분의 2 이상의 동의)</p>

[별표4]

내진기술 인증절차

○ 내진기술 인증절차 체계도



○ 내진기술 인증절차 세부내용

1. 선택(selection)

선택단계는 결정기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입력을 수집하고 생성하기 위한 계획 및 준비 활동을 포함한다.

가. 기술인증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및 검토한다.

- (1) 기준에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기준에 정하고 있는 기술 및 성능 등의 적정한지 여부
- (3) 기준에 정하고 있는 수준이상의 특성과 성능인지 여부

나. 기술인증을 위한 신청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사항이 요구되며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 (1) 내진기술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 (3) 내진인증관련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4) 신청 기술에 대한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결정(determination)

결정단계는 기술 요구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 및 증명발행 기능을 위한 입력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험, 측정, 검사, 설계 평가, 서비스 및 프로세스 평가, 그리고 심사와 같은 적합성평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인증기관은 신청기술의 표시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세운다.

- (1) 신청 기술의 인증여부 확인
- (2) 신청 기술의 특징 및 관련 산업
- (3) 인증요건을 명확히 정의, 문서화, 이해 여부 확인
- (4) 신청인과 인증기관과의 차이점 해결 여부 확인
- (5) 인증범위, 사업장, 특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증서비스 수행능력 보유 확인
- (6) 신청인 및 기술에 관한 정보는 인증절차를 수행하는데 충분한지 여부
- (8) 요구하는 인증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9) 모든 평가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한지 여부
- (10) 인증기관은 신청의 인증범위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및 언어와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능력여부

나. 기술심사는 제14조 기술인증 심사원의 인원 중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신청 기술을 심사한다.

- (1) 기술인증 심사원은 신청 기술의 특성 및 산업 분야 등 뿐만 아니라 기술 심사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에서 구성한다. 단,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가 없도록 균형있는 심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은 구성된 기술인증 심사원에 서면, 화상 및 대면 발표 등을 통하여 해당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3) 기술인증 심사원은 기술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진 관련 필요성 및 효과성, 내진 성능, 신뢰성 및 안정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하여 해당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4) 기술 심사원의 심사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단한다.
- (5) 기술심사에 합격한 경우, 종합심사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기술심사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 현장확인인 기술심사에 참여한 기술심사위원 중 1인 이상으로 신청 기술이 적용된 현장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기술심사 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3. 검토(review)

검토단계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선택 및 결정 활동의 적정성, 충분성 및 효과성과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심사와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가. 인증기관은 기술심사 평가표와 현장확인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인증심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평가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지적된 의견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결정 (decision)

의사결정단계는 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증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한다.

가. 기술심사, 현장확인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에 대한 결정은 제8조에 따라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사에서 실시한다.

- (1) 종합심사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기술심사, 현장확인의 결과 및 신청인 의견서가 내진인증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구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 (2) 인증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안전이 없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3) 인증기관은 심사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인증위원회 개최 1주일 전부터 심사 관련 자료를 인증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4) 종합심사는 인증위원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나. 심사 중 기술심사와 현장확인 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증기준 등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진기술 인증을 불허한다.

다. 내진기술 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반드시 명백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내진기술 인증의 유지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내진기술 인증을 받아 해당 기술을 보유한 신청인은 내진기술 인증 업무약정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종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내진기술 인증 당시 요건으로 유지,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후관리 시에 발견되면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인증취소, 표시정지, 판매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2) 신청인이 인증받은 기술이 인증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절차서에 만족하도

록 표시하여야 한다.

- (3) 신청인은 인증결정 절차서에 따른 내진인증 업무약정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내진인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4)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5) 정기심사와 같은 사후관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원 발생 및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6)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인증받은 내진기술 주요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마. 내진기술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증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바.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에 개선권고, 인증중단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5. 증명발행

증명발행 단계는 검토 후 내려진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이 실증되었다는 표명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인증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문서인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다.

- (1) 인증기관의 명칭
- (2) 인증 승인일자
- (3)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인증기술명
- (6) 인증 유효기간 등

나. 적합에 관련된 권리, 표시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소유권, 면허의 사용 및 표시에 대하여 해당법률 및 관련기준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적합성 인증스킴을 표시하기 위해 동일한 마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각 인증마크의 의미에 대한

혼동을 피하도록 인증기업이 기술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며 해당 마크의 표시 전에 그 표시내용 및 도안을 첨부하여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라. 해당 내진인증마크(별표1)의 도안, 표준(규격) 및 색상 등은 별도의 절차서(예: 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절차서)를 제정하여 관리한다.
- 마. 업무약정서상에 인증구분, 인증 기술명 및 인증범위를 표시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인증범위는 생략할 수 있다).
- 바. 신청인은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내진인증 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증기관 및 신청인은 내진인증 마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약정서에 명기하고 준수한다.
- 사. 인증기관은 광고, 카달로그 등에서 내진인증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이선스,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고, 표시정지, 인증취소에 관한 문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6. 사후관리

- 가. 인증기관은 인증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매자의 불만 등으로 인증기술의 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특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나. 특별심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해당 기업에 경고, 인증마크 표시정지, 약정 취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처분 결과를 해제한다.
 - (1) 경고 : 개선 경고의 경우,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시 확인 후 해제한다.
 - (2) 표시정지 : 개선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아 표시정지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해제하며,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표시정지가 된 경우는 기술 성능에 대한 평가 후 합격 시 해제한다. 단, 불합격 항목에 한하여 시행한다.

[별표5]

인증제품별 평가기준

1. 인증대상 제품별 규격기준

인증대상제품	규격 번호	비 고
천장 받침재	규격번호 필요	등급

2. 인증대상 제품 공장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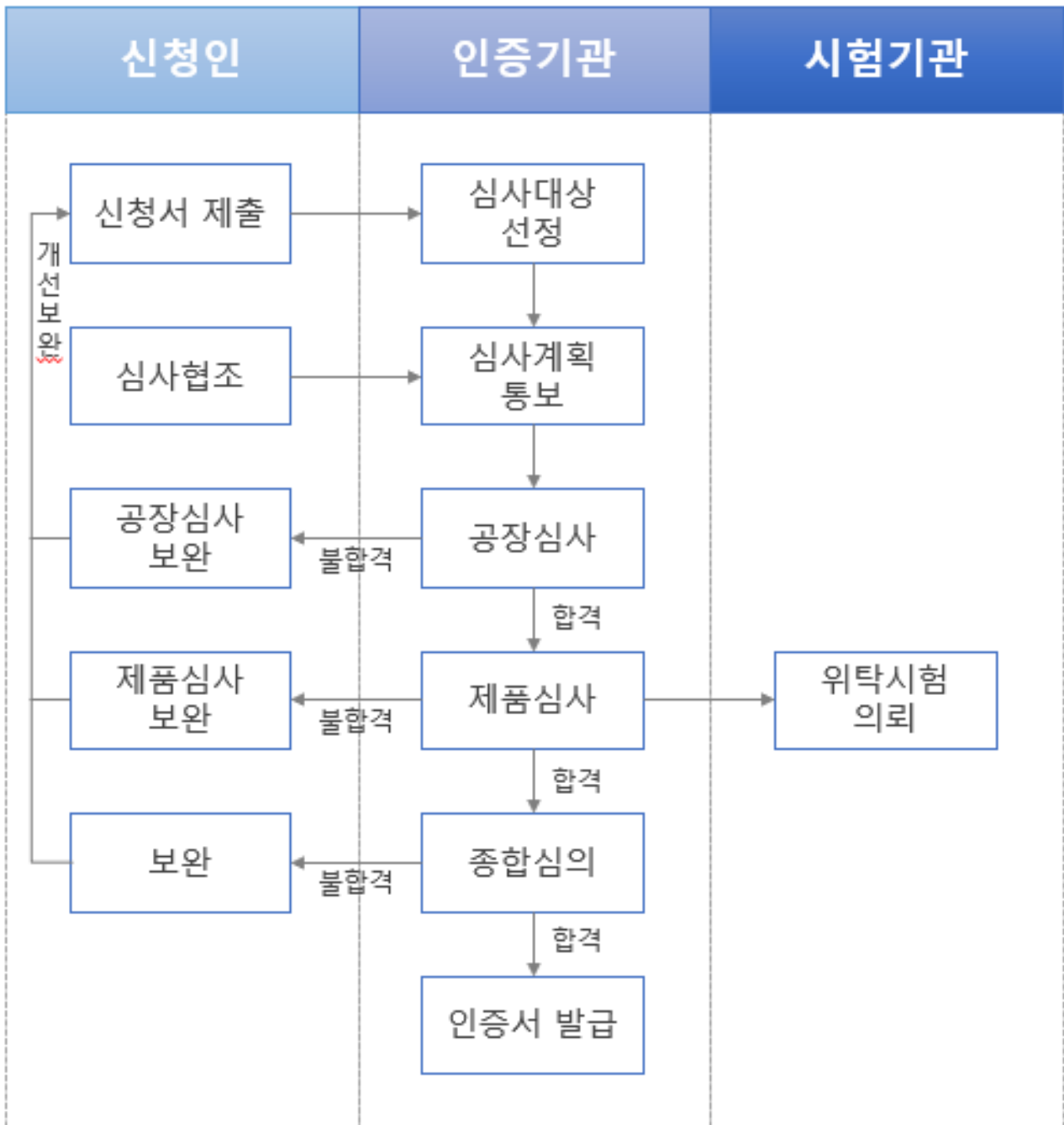
구분	심사 항목별 정의	평가 기준
공장심사	<p>A. 표준화일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자의 열의 : 사내표준 규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와 능력 2. 품질관리 일반 : 품질관리의 조직, 인원 및 교육을 적절성 3. 소비자 보호체계 : 소비자 불만사례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처리방법 4. 작업환경 : 작업장의 청결, 환경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p>B. 자재의 관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재 기준 수립 :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규정, 자재의 품질기준 수립 여부 2. 사용 자재 검사 및 관리 : 자재의 검사수준 및 자재 인수시 품질검사 및 자재관리 <p>C. 공정관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별 관리규정 설정 : 주요 공정별 검사, 제조설비 및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법 적용한 작업표준 설정 2. 공정별 작업표준 준수 : 제조 각 공정에 대한 작업표준 준수 및 주요 공정별 검사 실시 여부 <p>D. 제품의 품질관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품질검사 항목 설정 및 이행 여부 <p>E. 제조설비의 관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 보유 및 관리 2. 제조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실시 여부 3. 제조설비의 예방보전활동 <p>F. 검사설비의 관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검사 설비 보유 및 관리 상태 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p>70점 이상</p> <p>(별지 제7호 서식)</p>

구분	심사 항목별 정의	평가 기준
제품심사	<u>주요 목적</u> : 제품별 규격기준에 대한 신청제품 성능 확인	적합 (별지 제8호 서식)
종합심사 [심의]	<u>주요 목적</u> : 1.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적절성 2. 심사 결과와 내진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3. 내진인증의 필요성 <u>A. 인증위원회 서면회의</u>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서류에 대한 확인	적/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표6]

내진제품 인증절차

○ 내진제품 인증절차 체계도



○ 내진제품 인증절차 세부내용

1. 선택(selection)

선택단계는 결정기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입력을 수집하고 생성하기 위한 계획 및 준비 활동을 포함한다.

가. 내진제품 인증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및 검토한다.

- (1) 해당되는 규격명, 규격번호
- (2) 기준에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3) 기준에 정하고 있는 재료와 구조 등에 적정한지 여부
- (4) 기준에 정하고 있는 수준이상의 특성과 성능인지 여부

나. 내진제품 인증을 위한 신청인의 구비서류는 다음 사항이 요구되며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 (1) 내진제품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3) 내진인증관련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4) 인증신청제품 및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자유양식]
- (5) 인증신청제품 관련 사내규격서 사본
- (6) 신청제품의 주요 제조·가공 설비 목록
- (7) 신청품목의 주요 시험·검사 설비 목록
- (8) 기타 증빙자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목록 및 제품인증서 등)

2. 결정(determination)

결정단계는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 및 증명발행 기능을 위한 입력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험, 측정, 검사, 설계 평가, 서비스 및 프로세스 평가, 그리고 심사와 같은 적합성평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의 표시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세운다.

- (1) 신청제품의 인증여부 확인
- (2) 신규공장, 품목추가, 종류추가 등의 여부 확인
- (3) 공장심사 일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4) 인증요건을 명확히 정의, 문서화, 이해 여부 확인
- (5) 신청인과 인증기관과의 차이점 해결 여부 확인
- (6) 인증범위, 사업장, 특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증서비스 수행능력 보유 확인
- (7) 신청인 및 제품에 관한 정보는 인증절차를 수행하는데 충분한지 여부
- (8) 요구하는 인증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9) 모든 평가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한지 여부
- (10) 인증기관은 신청의 인증범위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및 언어와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능력여부

나. 공장심사는 적격성이 확인된 심사원 중 신규 및 갱신일 경우 심사원 2인 이상, 정기심사의 경우 심사원 1인 이상을 선임하고 공장심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세부심사항목에 대하여 인증 의뢰기관을 심사한다.

- (1) 개별심사항목에 따라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심사항목별 요구수준, 주요 심사내용, 중요착안사항 등에 대해 다루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공장심사 불합격 시, 심사원은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 (2) 공장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3) 해당마크 제품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동일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품심사는 해당 제품 규격에 의거 실시한다.

- (1) 공장심사에서 합격하거나 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산된 제품을 심사원이 직접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제품심사를 하며 시험은 지정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제품에 대한 4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발급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제품심사를 대체한다. 이 경우, 시험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판정한다.
- (2) 시료채취는 다음을 따른다.

- a.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샘플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시료 개수는 제품 규격에 명시된 로트의 구성 및 시료 수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신청 제품별로 1개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는 제품인증을 위해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b. 시료채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채취 시 신청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 c. 심사원은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제품인증신청 품목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모집단 중 대표성을 가지는 시료를 샘플링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채취한다.
- d. 시료채취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원은 운반이 쉽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시료채취를 완료한다.
- e. 인증과정 중 해당 표준이나 기준과의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세스를 중지(예 : 시험 중지)할 것인지 모든 부적합이 설명된 최종 보고서 제출 시까지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해 샘플을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한다.
 - 인증 프로세스의 남은 부분에 부적합이 영향을 주지 않고 남은 시험과 제품 최종평가에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관찰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샘플을 교체할 것인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교체 후, 변경에 의해 획득한 시험결과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부분적인 반복시험을 실시한다.
 - 부적합이 전체 인증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시험을 중지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은 부적합 사항을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새 샘플을 이용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두 경우 모두, 시험기관은 해당 상황을 인증기관에 알린다.
- f. 샘플의 변경(시도) 횟수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2번의 시도가 모두 부정적일 경우, 해당 제품은 인증 획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검토(review)

검토단계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선택 및 결정 활동의 적정성, 충분성 및 효과성과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가.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체크리스트와 제품심사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인증심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공장심사 부적합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하며, 제품심사 부적합 시는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후 모든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심사원을 선임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공장심사는 생략한다.

4. 의사결정(decision)

의사결정 단계는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증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취소 등의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한다.

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에 대한 결정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심의 중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증기준 등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인증을 불허한다.

다. 제품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반드시 명백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품인증의 유지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제품인증을 받아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은 제품인증 업무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종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인증 당시 요건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후관리 시에 발견되면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인증취소, 표시정지, 판매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2) 신청인이 인증받은 제품에 인증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절차서에 만족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3) 신청인은 인증결정 절차서에 따른 내진인증 업무약정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제품인증 업무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4)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갱신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5) 정기심사는 공장심사를 인증획득 후 2년 이내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제품인증의 유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규정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심사, 갱신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품심사 주기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결재를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 b. 공장심사결과 합격이면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c. 인증의 유지를 위해 신청인이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생산중단보고를 한 경우 제품심사는 기간이 생산중단보고 만료 시점까지 연장된 것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생산중단보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개시 보고를 실행한다.
- 마. 제품인증의 확대는 신규 제품인증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다만 동일 인증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바.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제품인증 기업에 개선권고, 인증중단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5. 증명발행

증명발행 단계는 검토 후 내려진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이 실증되었다는 표명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인증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문서인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인증마크사용을 허가한다.

- (1) 인증기관의 명칭
- (2) 인증 승인일자
- (3)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인증제품명
- (6) 인증 유효기간 등

나. 적합에 관련된 권리, 표시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소유권, 면허의 사용 및 표시에 대하여 해당법률 및 관련기준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적합성 인증스킴을 표시하기 위해 동일한 마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각 인증마크의 의미에 대한 혼동을 피하도록 인증기업이 제품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며 해당 마크의 표시 전에 그 표시내용 및 도안을 첨부하여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해당 인증제품에 표시하는 내진인증마크(별표1)의 도안, 표준(규격) 및 색상 등은 별도의 절차서(예: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절차서)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마.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제품인증표시를 확대, 축소하여 이를 홍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 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바. 업무약정서상에 인증구분, 인증 제품명 및 인증범위를 표시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인증범위는 생략할 수 있다.)

사. 신청인은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내진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품인증표시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주지시키며 업무약정서에 명기한다.

아. 인증기관은 광고, 카달로그 등에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제품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이선스,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고, 표시정지, 인증취소에 관한 문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6. 사후관리

가.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을 결정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특별심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해당기업에 경고, 내진인증마크 표시정지, 약정 취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처분 결과를 해제한다.

(1) 경고 : 개선경고 경우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시 확인 후 또는 제품 심사 후 합격 시 해제한다. 단, 제품심사는 불합격 항목에 한하여 시행한다.

(2) 표시정지 : 개선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아 표시정지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확인 후 해제하며,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표시정지가 된 경우는 제품심사 후 합격 시 해제한다. 단, 불합격 항목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시행한다.

다. 제품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소기의 수정사항과 같이 KS Q ISO/IEC 17065 7.10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변경사항 또는 관련이 있다면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신청인이 선언한 변경사항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인증기관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연후에야 선언한 변경사항에서 연유하는 인증제품을 방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진기술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갱신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본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공장 (해당시)	주소		
		공장 규모 대지:	m² / 건물:	m²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인·허가 상황	ISO/KSA 9001 취득여부 <input type="checkbox"/> 취득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취득일
		기타인증수	개	임의 () 개
	기술보유	특허	건	실용신안
수상 경력		건	디자인	
신청 기술	기술 명칭			
	기술핵심단어 [() ()]			
	[() ()]			
업체 담당자	성명	직위	H.P.	
	TEL	팩스번호	E-Mail	

「내진인증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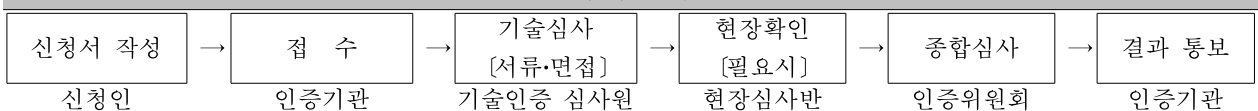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내진인증 신청서류의 신뢰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증빙자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목록 및 제품인증서 등)	수수료(V.A.T별도)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별지 제2호 서식]

내진제품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갱신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설립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본사	주소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	주소				E-Mail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허가 상황	ISO/KSA 9001 취득여부 <input type="checkbox"/> 취득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취득일	
기타인증수		개	임의	() 개	의무 () 개		
기술보유	특허	건	실용신안	건	디자인	건	
	수상 경력						
신청 품목	제품명			표준번호			
업체 담당자	성명		직위		H.P.		
	TEL		팩스번호		E-Mail		

「내진인증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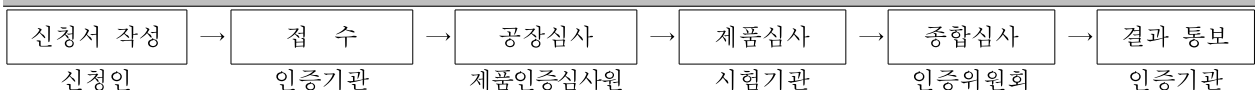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2. 내진인증관련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3. 인증신청제품 및 인증신청업체 설명서_(자유양식) 4. 인증신청제품 관련 사내규격서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요 제조·가공 설비 목록 6. 신청품목의 주요 시험·검사 설비 목록 7. 기타 증빙자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목록 및 제품인증서 등) 	수 수 료(V.A.T별도)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내진인증관련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당사는 「내진인증 운영규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내진인증을 신청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 제품(기술)을 신청대상에 대한 설명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신청서에 기재되는 개인식별정보(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등), 업체의 재무정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4. 내진인증이 지정된 이후 인증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인증받은 제품(기술)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5. 내진인증 업무의 공정한 평가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내진인증 운영규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 기술에 대한 설명서

1. 신청기술의 개요

1.1 신청 내용

재난 관리 단계	명 칭
<input type="checkbox"/> 예방 <input type="checkbox"/> 대비 <input type="checkbox"/> 대응 <input type="checkbox"/> 복구	

1.2 타인권리 침해여부

본 기술은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권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기술임을 확인합니다
--

1.3 신청 기술에 대한 설명

- 신청 기술의 주요 기능, 형태, 특성, 원리 등

1.4 신청 기술 구성 및 재료

- 신청 기술 주요 자재

구분	제품명 (모델번호)	자재 소요량				원산지 (공급자)
		자재명	재질/등급	단위	수량	

2.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신청기술의 성능 및 기술이 지진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정도

3. 내진 성능

- 신청기술이 지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내진 성능을 충족하는지 정도를 정량적으로 작성

3.1 신청 대상의 성능

구분	성능 항목	일반 기준값 (관련 근거)	기존제품 성능값 (관련 근거)	신청제품	
				성능값 (관련 근거)	생산 시 성능기준
1	화질성능 (해상력)	70 %이상 (조달 MAS 규격)	75 % (QT18-12345)	85 % (QT19-24568)	80 %
2					
3					
4					
5					

- 일반 기준값 : 국제표준, 국내외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에서 제시되는 기준값
- 성능값 : 시험성적서, 연구보고서 등의 근거자료 제출

4. 신뢰성 및 안정성

4.1 성능항목별 평가방법(기준)

-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ISO, IEC 등), 국내외 국가표준(관련 법령, KS, 단체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 항목 및 평가환경
- 근거자료(시험성적서, 해석자료 등) 필수

4.2 인증보유현황

구분	신청대상 연관성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
1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2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3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4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 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 인증제도 현황 참조

5. 현장 적용성

5.1 제조 및 가공

- 신청 기술이 적용된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규격서 등 첨부

5.2 시공 및 설치

- 신청 기술이 적용된 내용 포함. 시방서, 작업표준 등 첨부

6. 전회(前回) 차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사항(해당시)

- 전회 차 심사 때 심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보완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단, 보완된 내용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지적된 의견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심사 평가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 체 명											
기 술 명											
사전 검토	지진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내진관련 적합 여부 확인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확인(특허, 실용신안 등(전용실시권 포함))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성 (25)	신청기술의 성능 및 기술이 지진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정도를 평가	평가 점수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매우 우수(25)</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우수(21)</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보통(17)</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미흡(14)</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매우 미흡(10)</td> </tr> </table>	매우 우수(25)		비교적 우수(21)		보통(17)		비교적 미흡(14)		매우 미흡(10)	
매우 우수(25)		비교적 우수(21)		보통(17)		비교적 미흡(14)		매우 미흡(10)			
내진 성능 (30)	신청기술이 지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내진 성능을 충족하는지 정도를 평가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매우 우수(30)</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우수(25)</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보통(20)</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미흡(15)</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매우 미흡(10)</td> </tr> </table>	매우 우수(30)		비교적 우수(25)		보통(20)		비교적 미흡(15)		매우 미흡(10)	
매우 우수(30)		비교적 우수(25)		보통(20)		비교적 미흡(15)		매우 미흡(10)			
신뢰성 및 안정성 (20)	신청기술 및 성능에 대한 입증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진상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도를 평가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매우 우수(20)</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우수(17)</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보통(14)</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미흡(11)</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매우 미흡(8)</td> </tr> </table>	매우 우수(20)		비교적 우수(17)		보통(14)		비교적 미흡(11)		매우 미흡(8)	
매우 우수(20)		비교적 우수(17)		보통(14)		비교적 미흡(11)		매우 미흡(8)			
현장 적용성 (25)	신청기술 및 성능이 지진 특성에 맞게 설치되고, 해당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정도를 평가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매우 우수(25)</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우수(21)</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보통(17)</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비교적 미흡(14)</td> <td style="border: none;"> </td> <td style="border: none;">매우 미흡(10)</td> </tr> </table>	매우 우수(25)		비교적 우수(21)		보통(17)		비교적 미흡(14)		매우 미흡(10)	
매우 우수(25)		비교적 우수(21)		보통(17)		비교적 미흡(14)		매우 미흡(10)			
총 점											
현장 확인사항											
※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이거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평균 점수 :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100점 만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현장확인 보고서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신청기술명 :

심 사 장 소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2. 공장의 일반현황

o 종업원 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o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연)	백만원
경 상 이 익 (연)	백만원	연구 개발비(연)	백만원
수출	국가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기타 생산품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원자재의 제품 원가비율	%
	임의 ()개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상 (), 중 (), 하 () (해당란에 o표 하시오)		
소 요 원 자 재			
회 사 의 연 혁	* * * *		
특 기 사 항	o 공장심사 참관자		
	성 명	직 급	부 서
	o 기술지도 현황:		
기 타 사 항			

3. 시료채취 현황

표준번호	품 목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 시험 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심 사 원

(인) 대 표 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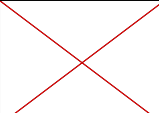
심 사 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4. 최근 3개월(12개월)간 검사 평균 DATA 현황

품 목 :
 모 델 명 :
 기 간 :
 검 사 항 목 :

구분	빈도수	평균값 (A)	기준값	현 장 시험값	오차 (B)	오차율(%) (B/A×100)
20 년				$x_1 =$		
20 년				$x_2 =$		
20 년				$x_3 =$		
평균		0.00		$\bar{x} =$ (평균)		

상기와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심 사 원

(인) 대 표 자

(인)

심 사 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5. 제조(가공) 설비(표준번호 및 표준명) 보유현황

NO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용량/능력	제작사	설치년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제조(가공)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심사원

(인) 대 표 자

(인)

심사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6. 시험(검사) 설비(표준번호 및 표준명) 보유현황

NO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능력	제작사	설치 년월	교정일자	비 고
						교정기관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심사원

(인) 대 표 자

(인)

심사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7. 공장심사 부적합 요약서

공 장(회사) 명		소 재 지	
신 청 품 목 (모 텔 명)		신청일자	- 심사기간

심 사 사 항	평가 항목	평 점	부 적 합 사 항
I . 품질경영	(1)		
	(2)		
	(4)		
	(5)		
	(6)		
II . 자재관리	(2)		
III . 공정관리	(1)		
	(2)		
	(3)		
IV . 제품의 품질관리	(2)		
	(3)		
V . 제조설비의 관리	(1)		
	(2)		
VI . 검사설비의 관리	(3)		
총 평 점			

위와 같이 공장심사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심사원

(인) 대 표 자

(인)

심사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계층별, 분야별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최소 단위 부서장)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p> <p>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p> <p>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p> <p>중.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하.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수립·관리가 미흡하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p> <p>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p>	<p>6</p> <p>4.5</p> <p>3</p> <p>1.5</p> <p>0</p>	
		<p>(4)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p> <p>상.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p> <p>중상. 재직경력 9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p> <p>중. 재직경력 6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p> <p>중하. 재직경력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수행 결과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7</p> <p>5</p> <p>3.5</p> <p>2</p>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5)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 규정을 KS Q ISO 10002(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p> <p>상.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KS Q ISO 10002(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토대로 회사 규모나 실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p> <p>중.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KS Q ISO 10002(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p>(6)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p> <p>상.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전사적·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p> <p>중.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2. 자재 관리	<p>(1) 자재 규격 등 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품 표준(규격)에 근거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p> <p>상. 자재의 품질항목 및 품질기준이 제품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p> <p>중. 규정된 내용은 제품 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 게시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 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p> <p>중상.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 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하.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의 이해 및 비치. 게시 상태가 미흡하고,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p>	<p>5</p> <p>4</p> <p>2.5</p> <p>1</p> <p>0</p>	
		<p>(3)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정하고 있고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관리하고 있는가</p> <p>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관리하고 있는 경우 * 주요공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 품질관리에 활용</p> <p>중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하.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간검사자의 제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실시상태가 미흡하며, 규정의 이해상태 및 기록관리도 미흡한 경우</p>	<p>5</p> <p>4</p> <p>2.5</p> <p>1</p>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4. 제품의 품질관리	<p>(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제품 표준(규격)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p> <p>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 수준이 제품 표준(규격) 수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p> <p>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제품 표준(규격) 수준 이상이며, 제품 검사방법은 “창”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4 2 0	
		<p>(2)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표시사항 포함)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품 표준(규격)의 심사항목중 사내표준에 규정된 주요품질항목에 대하여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율 등의 통계적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p> <p>상.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p> <p>중상.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이 일부 미흡하고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중하. 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가 누락 되거나 또는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경우</p> <p>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p>	8 6 4 2 0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3)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품 표준(규격),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표준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p> <p>상.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제품 표준(규격) 및 사내표준, 검사방법, 합·부 식별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고 숙련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가 표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 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12개월(다만, 인증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값과 비교하여 불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p> <p>중상.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제품 표준(규격)을 만족하고 각 시험 항목별 최근 12개월(다만, 인증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값과 비교하여 불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으나 제품 검사자의 숙련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나, "창"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p> <p>중하. 제품 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숙련이 일부 미흡하고, "창"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p> <p>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p>	<p>8</p> <p>6</p> <p>4</p> <p>2</p> <p>0</p>	
	5. 제조설비 관리	<p>(1)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p> <p>상.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게시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p> <p>중상.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가 미흡한 경우</p> <p>중. 내진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안전 수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일상관리가 미흡한 경우</p> <p>중하. 내진인증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안전 수칙 게시 및 일상관리가 미흡하고 운전 안전 수칙의 규정이 미흡한 경우</p>	<p>5</p> <p>4</p> <p>3</p> <p>2</p>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2)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교환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p> <p>상.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교환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p> <p>중.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 설비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3</p> <p>1</p> <p>0</p>	
		<p>(3)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예방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p> <p>상.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소모품, 교체부품 및 윤활유 등의 선택기준, 사용량, 교체주기, 폐품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 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예방보전활동을 실시 및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p> <p>중. “상”에 의한 기준의 설정은 되어 있으나 설비 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기록·관리가 미흡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6. 시험검사 설비관리	(1) 제품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사내표준(설비관리규정, 설비관리대장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p>*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봄</p> <p>상.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한 하고, 사내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p> <p>중상.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표준이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경우</p> <p>중.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표준에 따른 기록이 전혀없는 경우</p> <p>중하.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표준이 규정되어 있</p>	<p>4</p> <p>3</p> <p>2</p> <p>1</p>	

구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p>(2) 사내표준(시험·검사 대상설비, 교정 주기, 소급성 체계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되고 있는가?</p> <p>* 교정주기는 통상 국가기술표준원 고시(KOLAS-G-008)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이하 “치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 만약, “치침”에 따른 교정주기 이상으로 관리하고자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p> <p>상. 사내표준에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p> <p>중.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p>(3)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장소,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p> <p>상.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p> <p>중.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p> <p>하. “중”에 미흡한 경우</p>	<p>4</p> <p>2</p> <p>0</p>	

시 험 결 과

기 업 명 :

제 품 명 :

성적서번호 :

모 델 명 :

시험 항목	기준치	시험 결과(시료)			합격 여부 판정
		1	2	3	
시험 표준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 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송부합니다.

붙 임: 시험성적서 1부. 끝

년 월 일

시험기관의 장

직인

내진인증 업무약정서

내진인증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 은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내진인증업체로 지정하고, 본 내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1조(인증대상)

인증구분	인증 제품(기술)명	인증범위
□ 내진제품 □ 내진기술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갱신심사를 통하여 (4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 _____ 원 (단, 부가세 별도)

제4조(보상책임) 소비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을 시에 보상은 물론 민. 형사상 “을”이 책임져야
한다.

제5조(인증품목의 품질) “을”은 “갑”이 정한 인증 제품(기술)에 적합한 제품(기술)을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의 표시) “을”은 “갑”이 소유하는 업무표장으로써 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절차서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제작하여 제공한 소정의 표시판을 공장의 정문 또는 사무실에 게시할 수
있다.
2. 제1조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내진인증마크 작도기준에 따라 축소 및 확대하여 이
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표시는 인증범위에 적합한 인증에 국한하여 제품표면,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제1조의 인증품목, 인증분야 및 인증범위로만 하며, 필히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는 표시해서는 안된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을”이 홍보 및 광고 시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인증범위를 벗어난 과장표시, 허위 및 인증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 등으로

갑”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약정 취소는 물론 제반 보상을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약정불이행) 을”이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때 갑”은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인증해제 관련 의무) 인증이 정지, 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 을”은 인증서 및 표시판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대진인증마크’의 표시 및 홍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을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 을”은 인증심사 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한다.

- ① 불만의 조사 접수 및 처리방안 등의 기록을 포함한 문서와 기록의 조사
- ②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 및 위탁계약자와의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 불만처리 등) ① 을”은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은 불만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 시 그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불만사항 및 기타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기술)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받은 기준에 대한 변경) ① 갑”은 인증 제품(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된 요구사항의 시행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 제품(기술)에 대한 재심사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요구사항을 을”이 수용하는 경우 갑”은 필요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수용하고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재발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요구사항을 을”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갑”은 필요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수행하고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재발행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변경된 요구사항의 시행일부터 인증표시를 정지한다.

제12조(인증품목에 대한 변경) 을”은 제품(기술)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시방이나 생산프로세스 또는 품질시스템 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은 특별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을”이 인증 문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소재지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을”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1 서식]

내진 제품 인증서

인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제품명 :

[별지 제10호-2 서식]

내진 기술 인증서

인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기술명 :

[별지 제11호 서식]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전화번호
신청 개요	신청제품명	
	결과 통보일	결과 내용
이의 신청 내용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소명 방법	

「내진인증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내진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처리 절차

